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41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한창민·윤종오·백승아

김재원 · 강준현 · 민병덕

박은정 • 장철민 • 문정복

전종덕 · 한정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"사업자"를 제조업,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.

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(국제노동기구)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전단 중 "자를"을 "자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)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사업자"란 제조업, 서비스	1
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	
<u>자를</u> 말한다. 이 경우 사업자	자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
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	조정법」 제2조제1호의 근로
임원, 종업원(계속하여 회사	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
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	<u>다)를</u>
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.	
이하 같다), 대리인 및 그 밖	
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	
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	
로 본다.	
2. ~ 20. (생 략)	2. ~ 20. (현행과 같음)